

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5조제1항제5호

-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수정
⇒ “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”

○ 조례안 제7조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흡연구역 설치 시 준수사항 삭제

○ 조례안 제10조제2항

- 상위법 우위의 원칙상 당연규정 삭제
※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명문규정 없어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군수”를 “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<u>군수가</u>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</u>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2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</p>	<p>제7조(흡연구역의 지정)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

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, 화장실, 복도,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, 크기, 설치방법,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,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제1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 자	보건사업과장 채 정 희
연 락 처	(033)330-4820

관계 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 ④ 생략

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